

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경영자 과정 운영기관 모집 공고

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경영전문성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「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경영자 과정」 운영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2. 5. 11.

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경영자 과정
- 사업기간 : 2022년 6월 ~ 2022년 11월(6개월)
- 목적 :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전문성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
- 사업대상 : 3년 이상 사회적경제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수도권 내 교육기관
- 교육대상 :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대표, 임원, 실무책임자급 직원 등 20명~25명
- 사업내용 : 임직원 경영자 과정 운영
- 지원금 : 금25,000천원(금이천오백만원)

2. 모집안내 및 선정

- 모집규모 : 임직원 경영자 교육과정 운영기관 1개
-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2년 5월 25일(수) 17:00
- 모집대상 : 3년 이상 사회적경제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수도권 내 교육기관
- 사업기간 : 2022년 6월 ~ 2022년 11월(6개월)
- 자격요건(①, ② 모두 해당)
 - ① 3년 이상 사회적경제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수도권 내 교육기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.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대학 및 제29조 및 동법 제29조의2의 대학(원)
 -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조직 중 교육과 관련된 수도권 내 기관
 - 「민법」 제32조에 의거 경기도지사 및 중앙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
 - ② 사회적경제 교육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 2명이상 배치
 - ※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
- 지원금 : 금25,000천원(금이천오백만원)
- 평가위원 : 해당분야 전문가 5명 내외 구성 ※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1조(심사위원회) 준용
- 선정과정

공모	서면심사 (적격여부 확인)	대면심사 (제안서평가)	기관선정 결과발표	교육계획 협의 및 조정	협약체결
~5/25	5/26	5/27	5/30	6/1~8	~6/10

※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○ 심사방법

구분	내용	비고
서면심사	- 지원요건 및 신청 서류 적격 여부 확정 - 제출서류가 완비된 신청서에 한하여 대면심사 대상으로 확정	적격여부 확인 (사업담당자)
대면심사 (제안서발표 평가)	- 사업수행능력(40점) : 지역, 유사사업 수행경험, 사업수행역량, 네트워크 활용계획 등 - 프로그램 구성(60점) : 프로그램의 적절성, 프로그램 내용, 성과의 명확성, 예산편성 및 교육생 관리 등	배점(100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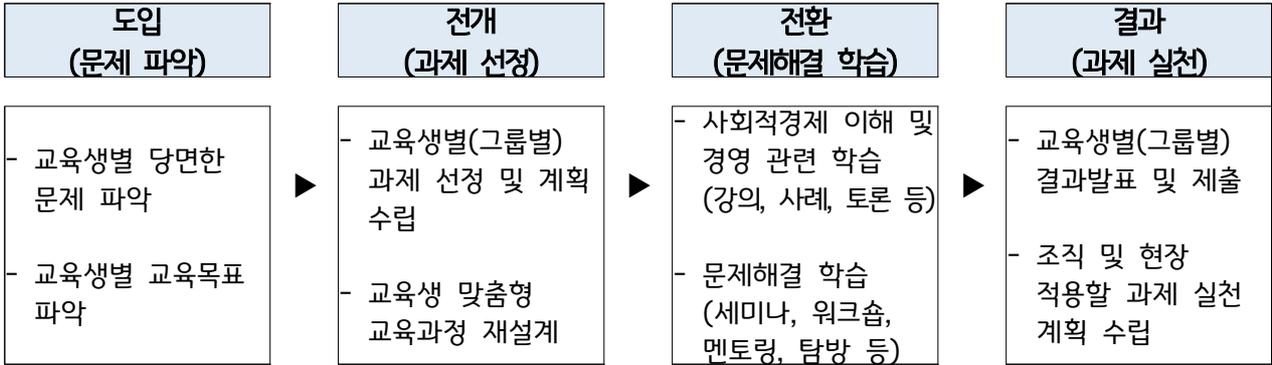
- 선정기준 : 대면심사 70점이상 득점 기관 중 최고 득점기관 선정
- 결과발표 :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
 - * 필요시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재조정할 수 있음
- 비 고 : 심사결과, 점수 미달로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재공고

3. 교육과정 운영

○ 과정운영(안)

구분	세부내용
과 정 명	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경영자 과정
교육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적경제 조직경영 및 현장이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한다. ○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영향력을 발휘한다.
교육인원 및 교육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교육인원) 20명~25명, (수료인원) 20명 ○ (교육시간) 50시간 ○ (교육기간) 2022년 6월 ~ 10월
과정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도입) 교육생별 당면한 조직 및 현장 문제, 목표 파악 ○ (전개) 사회적경제 이해, 교육생별 과제 선정 및 학습 계획 수립 ○ (전환) 교육생별(그룹별)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 진행 ○ (결과) 문제해결 학습 공유 및 과제 실천 계획 수립
교육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형 이론·현장교육, 대면/비대면 병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형 이론교육 : 강의, 사례, 토의, 토론 등 - 참여형 현장교육(40%이상) : 세미나, 워크숍, 멘토링, 현장탐방(1회 이상) 등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비 지원(자부담 별도) ○ 그룹별 멘토 혹은 코칭 지정하여 과제 수행 지원 ○ 우수 교육생 표창
전담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2명(총괄책임* 1명, 실무인력** 1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괄책임 :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, 기관 대표, 임직원, 관계자로 이 과정을 위한 교육기획·운영 인력 배치, 증빙자료 제출 - 실무인력 : 사회적경제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(연구포함) 또는 재직자, 소속직원이 아니더라도 이 과정을 위해 별도 배치 가능, 증빙자료 제출
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금 25,000천원, 자부담률 10%이상 책정

○ 과정구성(안)



※ 운영기관 선정 후 교육내용 협의 진행함

4. 교육생 모집 및 선발

○ 모집기간 : 6월 中 예정

○ 모집인원 : 경기도를 주사무소로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* 대표, 임원, 실무책임자급 직원 20명~25명

*“사회적경제조직”이란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항에 의한 “사회적경제조직”을 말함

○ 접수방법 : 지원서 작성 및 제출

○ 선발방법 : 1차/서류심사, 2차/면접심사

○ 심사위원 : 운영기관이 선정한 해당분야 전문가 구성

○ 선정기준 : 지원동기, 근무이력, 교육과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, 학습계획, 사회적경제조직 기여 계획 등

※ 교육생 선발방법은 운영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5. 교육생 혜택 및 활용계획

○ 지원내용

- 교육비 지원 ※ 교육비 중 자부담(1인당) 100천원 이상 책정

- 교육기관 명의 수료증 수여

- 수료생 혜택
 - 경기도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·인증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 의무교육 인정
 - *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
- 사후관리
 - 수료생은 경기도 시·군 사회적경제 멘토 활용
 -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

6. 접수방법

□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2년 5월 25일(수) 17:00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giban@gjf.or.kr) (giban@지제이에프.오알.케이알)

· 작성파일은 “[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경영자 과정]신청기관명.zip”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 · 신청 후 1~2일내 사업담당자가 서류 이상 유무 확인 및 전자우편으로 회신

○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

- 신청서 양식 :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(<https://gsec.or.kr>) 사업공고 참고
- 필수 제출서류

- ① 지원신청서 1부 ※ [별지 제1호 서식]
- ② 소개서 1부 ※ [별지 제2호 서식]
- ③ 사업계획서 1부 ※ [별지 제3호 서식]
- ④ 교육이행 실적증명서(계약서, 협약서 등) ※ [별지 제4호 서식] 자체서식 가능
- ⑤ (사업 참여인력)청렴이행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, (보안)서약서 각 1부
※ [별지 제5호 서식]
- ⑥ 기업의 범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*경기도만 해당)
※ [별지 제6호 서식]
- ⑦ 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(*경기도만 해당) ※ [별지 제7호 서식]
- ⑧ 법인등기부등본(말소포함) 및 고유번호증·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※ 원본대조필 날인
- ⑨ 사회적경제조직 설립근거 관련 서류 각 1부(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, 협동조합 설립신고증 등)
※ 원본대조필 날인
- ⑩ 전담인력(총괄책임 및 실무인력) 이력서 1부
- ⑪ 대면심사 시 발표자료(ppt, 한글 등 *ppt 20장 이내 분량) 1부 ※ 자체서식

○ 문의처 :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역량강화파트 사업담당자 ☎ 032-668-8540

7. 심사 및 결과발표

○ 심사절차 : 1차 서면심사(적격여부) → 2차 대면심사 → 최종합격기관 발표

○ 심사요건

- 1차 서면심사 :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
- 2차 대면심사(2022.5.27.예정) : 대면심사 70점이상 득점 기관 중 최고 득점기관 선정
· 평가기준

항목	배점	세부항목	심사내용				
사업수행능력 (40점)	10	유사사업 수행경험	- 유사 사업의 수행여부(3년이상) - 사업 수행 후 평가 및 반영 경험				
	10	지역여부	- 지역 소재지 여부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서울특별시/인천광역시</td> <td>경기도</td> </tr> <tr> <td>8</td> <td>10</td> </tr> </table>	서울특별시/인천광역시	경기도	8	10
	서울특별시/인천광역시	경기도					
	8	10					
10	사업수행역량	- 참여 인력의 숫자는 적정한가 - 참여 인력 역할 배분은 적정한가 - 사회적경제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					
10	네트워크 활용계획	- 운영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가 - 네트워크 활용 계획은 적절한가					
프로그램 구성 (60점)	15	적절성	- 교육계획은 사업목표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 - 수립된 교육계획은 실현가능한가 -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됐는가				
	15	프로그램 내용	-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기법이 활용되었는가 - 교육내용과 방법의 참신성과 창의성이 있는가				
	15	성과의 명확성	- 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이 사업성과(결과물)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프로그램에 담고 있는가				
	15	예산편성 및 교육생 관리	- 사업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- 교육생 모니터링 및 (사후)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가				

○ 최종결과발표 : 2022. 5. 30.(월). (예정)

※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(<https://gsec.or.kr>) 공지사항 및 개별문자 공지

※ 세부일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8. 유의사항

○ 의무사항

- 교육과정 기획, 교육생 모집 및 홍보, 교육생 관리, 교육과정 운영, 지원금 집행 및 관리, 만족도 조사, 최종 완료보고,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등
- 교육운영기관이 본 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 별도 교육생 추가 모집 금지
- 제출한 교육인원을 기준으로 수료율 80% 이상을 달성해야 함

○ 권고사항

- 대면접촉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방조치 필수
- 교육생 맞춤형 교육설계를 위해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, 중간평가, 간담회 등 실시하고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반영 권고

○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
○ 지원자는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○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

○ 심사결과 적합한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 할 수 있음

○ 각종 증명(빙)서 및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,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

9. 기타

○ 지원 제외대상

-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
- 경기도 기관일 경우,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범위 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」에서 정한 공정·노동·환경·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,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은 자

※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

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폐기물관리법
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등

- 선정기관이 ‘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’에 해당되거나 준하는 기준에 위배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○ 지원철회

-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수행 단체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
 -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
 - 사업수행자 및 단체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사업수행자 및 단체의 과업수행에 있어 협약(계약) 내용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
 - 기타 협약(계약)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,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